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조복희의원 외 7명
- 발의일자: 2021. 11. 25.
- 회부일자: 2021. 12. 3.
- 검토기간: 2021. 12. 3. ~ 12. 9.(7일간)

###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개정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33조 → 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제36조

나. 조문변경

- 달서구소속공무원 → 의회 소속 공무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3조 → 제40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 제36조로 변경하고, “달서구소속공무원” 을 “의회 소속 공무원” 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 관 련 법령 ]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